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0-04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-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24누33152 취득세부과처분취소

원고(선정당사자)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◯◯◯시장

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. 1. 9. 선고 2022구합14860 판결

변 론 종 결 2024. 5. 17.

판 결 선 고 2024. 6. 25.

주 문

1. 원고(선정당사자)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(선정당사자)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21. 2. 15. 원고(선정당사자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 및 선정자들(이하 총칭하여 '원고등'이라 한다)에게 한 취득세, 농어촌특별세, 지방교육세의 각 부과처분(이하 총칭하여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을 취소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0-04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5면 제20행의 "아닌 점"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③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9. 3. 14. 선고 2018두64214 판결은 M중앙회가 개정된 N법에 따른 경제사업 이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농협경제지주에 경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이전하게 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,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점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○○

판사 심○○

판사 김○○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0-04

선 정 자 명 단

1. A

2. K

3. L. 끝.